

법인해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